#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안

(임이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2363 발의연월일: 2021. 9. 1.

발 의 자:임이자·구자근·박대수

추경호 · 이헌승 · 송언석

성일종 · 정찬민 · 김성원

허은아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

주요 선진국들이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저탄소 경제 선도전략으로서 기후위기 대응 노력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, 우리 정부도 온실가스 배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탄소중립(Net-zero) 사회를 지향하기 위해 '2050 탄소중립 목표'를 선언한 바 있음.

이를 위해 정부는 순환경제, 기후변화 대응 등 녹색산업육성을 추진하고 있는 바, 유기성 폐자원의 바이오가스 생산과 이용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도록 법제화함으로써 순환경제의 활성화 도모 및 환경의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.

## 주요내용

가. 유기성 폐자원을 분뇨, 가축분뇨 등으로 정의하고 바이오가스를

재생에너지 중 유기성 물질을 변환시켜 발생하는 가스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함(안 제2조).

- 나.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유기성 폐자원의 배출 및 처리사항을 파악하도록 하고, 사업자가 바이오가스 생산에 적극 참여하도록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며, 국가로 하여금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에 관한 기술의 연구·개발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 그 책무를 규정함(안 제4조)
- 다. 환경부장관이 국가 전체의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, 회수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 등 유기성 폐자원 및 바이오가스에 관한 통계를 매년 작성하도록 근거를 마련함(안 제7조).
- 라.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 및 생산 목표 달성도 측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).
- 마.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에 게 유기성 폐자원 처분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(안 제11조).
- 바.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의 설정 및 이행 관리, 유기성 폐자원 및 바이오가스에 관한 통계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바이오가스센터의 설치·운영 근거를 마련함(안 제19조).

#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안

제1조(목적) 이 법은 순환경제의 구현을 통한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과 이용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유기성 폐자원"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.
  - 가. 「하수도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분뇨
  - 나.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
  - 다. 「폐기물관리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(농산물류·수산물류·축산물류 폐기물을 포함한다)
  - 라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기성 물질
- 2. "바이오가스"란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 제2조제2호사목에 해당하는 재생에너지 중 유기성 물질을 변환시켜 발생하는 가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
- 3. "바이오가스 생산"이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.

- 4. "바이오가스 생산시설"이란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
- 5. "바이오가스 이용"이란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바이오 가스를 전기 생산·열 공급 또는 기체연료 등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.
- 6. "바이오가스 이용시설"이란 바이오가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 된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
- 7. "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"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.
  - 가. 공공의무생산자: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 사·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
  - 나. 민간의무생산자: 가목 외의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유기성 폐자원을 배출하거나 처리하는 사업자
- 8. "탄소배출권"이란 「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권을 말한다.
- 제3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.
- 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 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관할 구역 에서 발생하는 유기성 폐자원의 배출 및 처리 상황을 파악하고 바 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설치·운영하도록 노력하고, 관할 구역에서 유

- 기성 폐자원을 배출하거나 처리하는 사업자가 바이오가스 생산에 적극 참여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- ②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충실하게 이행하는데 필요한 기술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- ③ 국가는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에 관한 기술의 연구·개발을 지원하고,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 지사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충실하게 이행하는데 필요한 기술적·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.
- 제5조(사업자의 책무) 유기성 폐자원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유기성 폐자원의 수거·운반 및 바이오가스 생산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.
- 제6조(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 등의 보고) ①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는 매년 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, 반입량, 처리량 및 용도별 재활용량과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산정·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  -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가 제출한 자료에 흠결이 있거나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.
  - ③ 제1항에 따른 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 등의 산정·작성 및 보고, 제2항에 따른 시정·보완 명령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

정한다.

- 제7조(통계 관리) ① 환경부장관은 매년 다음 각 호의 통계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.
  - 1. 국가 전체의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, 회수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
  - 2.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의 유기성 폐자원 배출량, 반입량, 처리량 및 용도별 재활용량과 바이오가스 생산량
  - 3. 생산된 바이오가스의 이용 현황
  - 4.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탄소배출권 획득 현황
  -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통계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.
  - ③ 제1항에 따른 통계 작성 및 제2항에 따른 정보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.
- 제8조(바이오가스 생산 목표의 설정) ① 공공의무생산자의 연도별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에 바이오가스 회수·생산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.
  - 1.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
  - 2. 제2조제1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 중 민간의 무생산자로부터 발생하는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을 제외한 양
  - ② 민간의무생산자의 연도별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는 제2조제1호다 목 및 라목에 따른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에 바이오가스 회수·생산

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.

- ③ 유기성 폐자원의 발생량과 유기성 폐자원별 바이오가스 회수・생산계수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.
- 제9조(공공의무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 달성) ① 공공의무생산 자의 연도별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 달성도는 다음 각 호의 바이오 가스 생산량을 기준으로 측정한다.
  - 1. 공공의무생산자가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는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바이오가스 생산량
  - 2. 민간의무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량에 환경부령이 정한 비율을 곱한 양
  - ② 공공의무생산자가 연도별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 달성을 위하여 제1항제2호의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인정받은 경우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제공한 민간의무생산자는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중복하여 인정받을 수 없다.
- 제10조(민간의무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 달성) ① 민간의무생산자의 연도별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 달성도는 다음 각 호의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기준으로 측정한다.
  - 1. 민간의무생산자가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는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바이오가스 생산량
  - 2. 해당 민간의무생산자 이외의 민간의무생산자가 제공한 바이오가 스 생산량

- 3. 공공의무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량 중 공공의무생산자가 민간 의무생산자에게 제공한 바이오가스 생산량
- ② 민간의무생산자가 생산 목표 달성을 위하여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인정받은 경우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제공한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는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중복하여인정받을 수 없다.
- 제11조(유기성 폐자원 처분 부담금) ① 환경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에게 유기성 폐자원 처분부담금(이하 "부담금"이라 한다)을 부과·징수할수 있다.
  -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.
  - 1.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가 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바이오 가스 생산시설 조성에 착공한 경우
  - 2. 유기성 폐자원의 물량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또는 비율 이하인 경우
  - 3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부담금을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정하는 경우
  - ③ 부담금은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한다.
  - ④ 부담금의 산정·감면 기준, 납부 시기·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

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- ⑤ 환경부장관은 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. 이 경우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.
- ⑥ 제5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「지방행정제재·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징수한다.
- ⑦ 부담금과 제5항 후단에 따른 가산금은 「환경정책기본법」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.
- ⑧ 환경부장관은 제21조에 따라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「한국환경공단법」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에 부담금과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징수된 부담금 및 가산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.
- ⑨ 환경부장관은 부담금을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자에 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- 제12조(부담금의 용도)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.
  - 1.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 시설의 설치 · 운영에 대한 지원사업

- 2.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주변지역의 환경 개선 및 주민 지원을 위한 사업
- 3.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과 관련된 연구·개발 및 국제협력 사업
- 4. 바이오가스 생산을 장려하기 위한 홍보·교육 등의 사업
- 5. 그 밖에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
- 제13조(유기성 폐자원의 확보) ① 국가,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사업자는 유기성 폐자원을 효율적으로 수거·운반·이송하기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.
  - ② 유기성 폐자원의 수거·운반·이송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 령으로 정한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유기성 폐자원의 수거·운반·이송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.
- 제14조(통합 생산시설의 설치) ①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는 유기성 폐자원을 통합 처리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 - ②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는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신설하거나 교체할 때에는 유기성 폐자원을 통합 처리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시설을 우선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15조(바이오가스의 이용 촉진) 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 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「도시가스 사업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「전기사업법」

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에게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이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

- ②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이 법에 따라 생산된 바이오가스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바이오 가스 우반·이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- ③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이 법에 따라 생산된 바이오가스의 양에 비 례하여 탄소배출권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16조(재정 지원) 국가는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- 제17조(민간의무생산자의 지원)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 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의무생산자가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(殘滓物) 등을 「하수도법」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, 같은 조 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또는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 처리시설에서 처리하게 할 수 있다.

제18조(지역 주민의 참여) ① 바이오가스 생산 또는 이용시설이 설치

된 지역의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해당 지역의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.

- 1.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사업에 출자하는 방식
- 2.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(「협동 조합 기본법」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을 말한다)에 조합원으로 출자하는 방식
- 3.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방식
- ②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 사업자는 발생한 수익 중 일부를 주민 참여 비율에 따라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에 따른 지역의 범위와 제2항에 따른 수익의 제공과 관련한 기준·절차·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.
- 제19조(바이오가스센터)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바이오가스센터(이하 "센터"라 한다)를 직접 설치·운영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센터의 설치·운영을위탁할 수 있다.
  - 1.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의 설정 및 이행 관리
  - 2. 유기성 폐자원 및 바이오가스에 관한 통계 관리
  - 3.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 기술의 사업화에 관한 지원 · 관리
  - 4. 바이오가스 생산 기술 개발 및 이용ㆍ보급사업의 지원ㆍ관리
  - 5. 유기성 폐자원 및 바이오가스에 관한 교육·홍보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지원·관리

- 6. 바이오가스에 관한 국내 · 외 조사 · 연구 및 국제협력 사업
- 7. 그 밖에 바이오가스의 생산·이용 및 보급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
- ② 환경부장관은 센터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- ③ 센터의 조직·인력·예산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 부렁으로 정한다.
- 제20조(보고 및 검사 등) ① 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·징수 대상자로 하여금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,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·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.
  -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의일시·목적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검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. 다만, 긴급히 검사할 필요가 있거나 미리 알리면 검사의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제21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

임할 수 있다.

- ②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「한국환경공단법」에 따른 한국환경공단과 그 밖 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- 제22조(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) 제19조제1항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「형법」 제129조부터 제132 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
- 제23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  - 1. 제11조제9항을 위반하여 부담금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 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
  - 2.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 짓으로 한 자
  - 3. 제20조제1항에 따른 출입·검사를 거부·방해하거나 기피한 자
  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
    관이 부과·징수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.

- 1. 공공의무생산자: 2023년 1월 1일
- 2. 민간의무생산자: 2024년 1월 1일